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2025. 12. 3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정 2022. 11. 22.

개정 2025. 12.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서산시가족센터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 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 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시설안전 화재예방 센터방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CCTV는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필요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은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1항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관리

제6조(CCTV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관련시설의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 등으로부터 센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외부 출입자를 통제하여 철저한 보안 유지와 신원불명자에 의한 사고방지와 사후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담당부서 및 책임자의 지정) ①서산시가족센터 CCTV 설치·운영 담당부서 및 책임자 등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총괄
2. CCTV 설치·운영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3. CCTV 설치·운영 책임자 및 연락처

구 분	직 책	연 락 처	비 고
관리책임자	기관장	664-2301	
운영책임자	총괄팀장	664-2302	
담당자	시설관리자	664-2305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CCTV 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운영책임자는 CCTV 설치·운영 및 관련한 사무 업무를 총괄하며, 담당자는 CCTV 장비의 정상작동·장비점검 및 필요 시 촬영상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CCTV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시간) ① CCTV의 설치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대수 : 38대(시설안전·화재예방·센터방호용)

지 하	1층	2층	3층	실 외
1	17	9	3	8

2. CCTV 설치위치 : 지하1층~지상 3층, 실외
3. CCTV 촬영범위 : 반경 30m이내
4.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제9조(안내판 설치) ①CCTV의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건물 안에 다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건물 입구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
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및 확인) ①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확인 방법 : 관리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라 요청
2. 확인 장소 : CCTV 방재실 또는 장난감도서관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 서식)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① 화상정보는 방재실 등에 설치된 녹화장치에 저장한다.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30일 경과시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이 지침은 2025. 12. 31.부터 시행한다.

- 8 -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가족센터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0. 16.>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가족센터장 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산시가족센터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관리대장

연번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기록시간	설치장소	목적 및 사유	비고